

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2년 3월 25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3월 17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3월 17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3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2년 3월 25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재정국장 한만석)

가. 제안이유

- 코로나19 재난대응중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및 시행령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의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 (안 제4조의2)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2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함(안 제14조의2)

-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함(안 제14조의6)
-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적용 시 직접 사용의 범위를 확대함(안 제15조)
- 지방세 감면 여부를 확인, 안내하도록 변경함(안 제1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수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한 의료기관의 감염병 진료 목적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필요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,
- 주요 개정 내용은
 - 안 제4조의2에서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의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 및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함
 - 안 제4조의6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 대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8조제4항 각호에서 100분의 50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에 직접 규정함.
 - 안 제15조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적용시 직접 사용의 범위 “건축물”을 “건축물 및 주택”으로 확대하였음.
- 본 개정조례안은 감면 규정의 신설과 세액공제 금액 확대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·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